

관리계획변경(취득)재산내용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취득대상재산소유 자 주소 및 성명	비고
염리동 9-237	대지	9	마포구 염리동 14-231 고영구	
염리동 14-321	대지	56.2	마포구 염리동 14-231 고영구	
염리동 9-237 염리동 14-321	건물	32.3	마포구 염리동 14-231 고영구	

2. 재산의 현황

- 위치: 대흥극장 뒤 염산교회에 맞은편에 위치한 일반주거지역임.
- 이용상태: 상기 소재지에 세멘브릭조/세멘와즙, 지상1층 건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3. 변경사유

- 현 염산노인정이 협소하고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현 부지를 매입수선하여 이용코자 함.

관리계획변경(매각)재산내용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매수희망자 주소 및 성명	비고
아현동 570-65	대	16	마포구 아현동 570-50 성우경	

2. 재산의 현황

- 위치: 아현국교 뒷편에 위치한 일반주거지역임.
- 이용상태: 사각형의 토지로서 매수희망자가 주거용으로 점유하고 있음.

3. 변경사유

-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함.

관리계획변경(매각)재산내용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매수희망자 주소 및 성명	비고
대흥동 6-13	대	3	마포구 염리동 17-34 임경재	
대흥동 30-8	대	7	상 동	

2. 재산의 현황

- 위치: 송문중고 뒷편 대흥가압장 앞에 위치한 일반주거지역임.
- 이용상태: 6M 소방도로 개설 후 남은 잔여토지로서 현 나대지 상태임.

3. 변경사유

-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함.

신공덕동재개발설립위원회위원장및입원자격취소의  
건청원심사보고서

1993. 10. 25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주소: 마포구 신공덕동 133-68  
성명: 박 명 건

나. 소개의원: 손 용 호 의원

다. 접수일자: '93. 10. 8.

라. 회부일자: '93. 10. 11.

마. 상정일자: 제19회의회(임사회) 제1차위원회  
('93. 10. 25.) 상정, 의결

2. 청원요지

신공덕동 재개발설립위원회는 해당 주민을 무시한채 설립구성되어 고도심의틀 마쳤을 뿐만 아니라 1991. 3. 27일 회의가 무산되었음에도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였고, 설계회사와 시공자를 주민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 선정하고 자금을 유용하는 등 파행적인 업무처리를 자행하고 있어 즉시 업무중지명령을 발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제15조제3항에 의거한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의 취소를 촉구함.

3. 취지설명요지(소개의원: 손용호의원)

신공덕동(133-68일대지역)을 도심재개발지구로 지정한 후 약 4년여의 시일이 지나도록 아직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의원은 신공덕동 주민의 청원을 받아들여 본회의에서 엄격한 조사권을 발의하여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또한 서울시 주택개량사업 업무지침 제15조제3항에 의거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도심재개발사업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중점사료되어 본청원을 소개함.

4.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 합동재개발의 방법으로 시행예정인 신공덕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일련의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의견차이로 현 재개발설립위원회와 가칭 재개발대책위원회간의 불신이 조장되고 있는바,

○ 주민 숙원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양측의 진지한 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 행정기관에서는 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령 및 선례 등을 정확히 홍보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적극적인 중재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동 재개발사업이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총회 회의록을 열람을 안시켜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 답변요지(최승범 주택과장): 회의록 열람을 안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열람은 하되 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임.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총회 회의록을 복사를 하게 하면 어떤가?

○ 답변요지(최승범 주택과장): 선의의 뜻으로 복사를 한다면 해주겠지만,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6. 토론요지

김종열위원: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

7.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심사결과의 의견: 별첨

10. 기타사항

○ 청원에 대한 간담회

• 일시: '93. 10. 25. 14:30~16:00

• 장소: 마포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4층)

• 참석자

신공덕동 재개발설립위원회(3인): 안동근, 이석규, 김점순

신공덕동 재개발대책위원회(3인): 박명건, 한경호, 김경자

신공덕동장: 김창복

• 내용: 재개발설립위원회 대표와 재개발대책위원회 대표 및 신공덕동장과의 연쇄 간담회를 통해 신공덕동 재개발의 실태에 관하여 의견청취

의 건 서

1. 합동재개발의 방법으로 시행 예정인 신공덕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일련의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의견차이로, 현 재개발 설립위원회와 가칭 재개발 대책 위원회간의 불신이 조장되고 있는 바, 주민숙원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양측의 진지한 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쌍방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사업의 지연 및 지역주민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행정기관에서는 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된 법령 및 선례 등을 정확히 홍보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적극적인 중재 및 지도 감독을 통하여, 동 재개발 사업이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